

조사자료로 본 가계부채문제: 조사자료간 비교를 중심으로

이호선
부산가톨릭대학교 경영학과 조교수

Preliminary Draft

본 논문은 현재 진행중인 상태로 2013년 한국FP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하기 위해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I. 서론

국가부채나 가계부채에 대한 뉴스는 이제는 더 이상 새롭거나 충격적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상적인 뉴스가 되어가는 것 같다. 2013년 5월 현재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이르고 있다는 기사나 정부부채는 2011년 기준 GDP대비 37.9%로 낮은 수준이지만, 공공부문의 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정부부채와 공공부채를 합쳐 GDP대비 75.2%수준까지 상승한다는 분석(조영무, 2013)이 나와도 경제구성원 전반에 걸쳐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국가, 가계의 부채문제는 우리나라 전반에 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임은 자명하다. 특히 과도한 부채로 인해 소비위축과 경제성장 저해 등의 제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 향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한국금융연구원, 2013).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접근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그 연구자료로 거시자료와 미시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시자료라 하면 주로 가계에 대한 대출을 수행하는 금융기관들의 여신자료를 합하여 작성된 가계신용을 활용하여 작성된 자료로 볼 수 있으며, 미시자료로는 개별 가계에 대한 대출현황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여러 조사자료들이 해당된다 하겠다. 가계부채통계는 주로 가계신용현황에 기초를 둔 거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어 왔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 경제의 중요 문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문제에 대하여 가계신용통계에 바탕을 둔 거시자료와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미시자료가 서로 일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사자료로 대표되는 미시자료들은 실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였다. 거시자료와 미시자료가 서로 일치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계층적 접근을 미시자료를 통해 시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며, 또한 여러 종류의 조사자료들이 모두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어떤 조사자료를 활용하든 동일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거시자료와 미시자료 간, 또는 미시자료들 간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그 차이를 어떻게 감안하고 활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에 대해 미시자료들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기존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노동패널조사가 지속적으로 이어오던 시점에서는 김학주(2005), 성영애(2006), 최필선, 민인식(2008) 김우영, 김현정(2010), 김경아(2011) 등이 노동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가계부채문제를 연구하였다. 한편 통계청이 가계자산관련 조사를 시작한 후 전승훈, 임병인(2008)은 2000년 가구소비실태조사와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를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성영애(2010)은 2006년 가계자산조사를, 전승훈, 임병인(2012)는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백은영, 성영애(2012), 한동익, 최현자(2012)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에 사용된 연구자료로 노동패널조사의 경우 1999년~2008년까지 존재하며, 통계청 조사자료들은 2001년과 2006년, 그리고 2010년 이후로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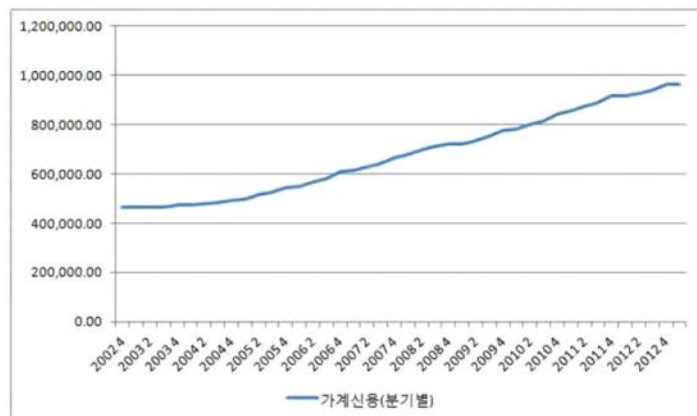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가계부채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거시자료에 대해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가계부채문제의 현황에 대해 알아본다. 다음으로 미시자료에 대해 살펴보고 미시자료를 구성하는 여러 조사자료들을 활용하여 가계부채문제의 현황을 다시 살펴본다. 그리고 이들 조사자료들의 분포적 특성을 통해 그 분포가 서로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제시한다.

II. 거시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접근

먼저 가계부채에 대한 보도에서 주로 인용되는 가계부채는 한국은행에 작성하는 거시자료인 가계신용 자료이다. 이 자료는 공급자의 측면에서 예금취급기관과 기타금융기관에 대해 조사한 자료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의 합으로 계산된다. 가계대출은 예금은행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우체국, 기타 금융기관인 보험기관, 연금기금, 여신전문기관, 공정금융기관, 기타금융중개회사 등에서 이루어진 주택대출과 기타대출을 합계하여 계산된다. 현재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가계신용 자료는 분기별로 작성되며 주택대출과 기타대출의 총량은 2008년 1분기부터 제공되고 있다. 판매신용은 여신전문기관과 판매회사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합산하여 계산된다.

<그림 1>은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¹⁾에서 얻은 가계신용의 증가추세를 나타낸다. 2002년 4분기에는 가계신용총계가 464조원이었던 것이 2013년 1분기에는 961조원으로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명목국내총생산은 2002년 720조원에서 2012년 1272조원으로 1.77배 성장한 것과 비교하면 가계부채가 더 빠르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가계신용 추세 (2002-2012)



1) 웹사이트: <http://ecos.bok.or.kr/>

이러한 가계부채의 증가에 대해서 한국금융연구원(2013)은 2000년대의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시장금리의 하락,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유지되었던 완화적 통화정책과 금융회사들의 경영행태 변화에 따른 가계에 대한 신용공급확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부채 조달을 통한 주택 구매 현상 등을 그 주요 원인으로 들고 있다.

한편 거시자료를 통한 가계부채 측정에 있어서는 한국은행의 가계신용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기도 한다. 실질 가계부채라 하여 가계신용에 더해 영세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을 합산하여 계산한 수치로는 2012년 말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098조 5000억원²⁾으로 집계된다. 이는 소규모 개인기업의 대출은 그 상환을 결국 가계가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며, 여기에 주택을 담보로 중소기업이 대출하는 경우도 실질적인 가계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다. 일부 부동산 정보업체에서는 아파트 전세 시가총액이 907.8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를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한다³⁾고 보기도 한다. 전월세 보증금은 그 임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에게 되돌려줘야 하므로 이자를 내지 않는 부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산이며,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부채이므로 가계부채에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경우 가계부채는 최대 20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기도 한다.

그러나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이나 가계대출과 유사한 성격의 중소기업대출, 또한 전월세 보증금의 경우 정기적인 통제가 산출되지 않고 있으며 다만 실질 가계부채라는 이름으로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과 가계신용을 합산한 수치가 부정기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III. 미시자료를 활용한 가계부채문제에 대한 접근

앞에서는 거시자료로 한국은행의 가계신용통계를 기초로 하여 우리나라 가계부채문제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 중 일부, 전월세 보증금까지도 가계부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일각의 논의도 함께 기술하였다. 한편 가계 구성원에 대한 면접조사로 만들어지는 조사자료의 경우 가계의 자산과 대출 현황, 임대보증금 규모 등을 그 조사항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가계부채문제에 대해 가계의 대출행태 및 그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거시자료가 가지지 못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전월세 보증금과 같이 거시자료가 반영하기 어려운 항목도 포함하여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자료는 여러 기관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조사자료는 통계청

2) 원희복(2013), 실질 가계부채 1100조원...점점 더 심각, 경향신문, 2013년 5월 15일.

3) 서영수(2012), 가계부채 총정리 Part I, 키움증권, 2012년 8월 21일.

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2001년에는 가구소비실태조사, 2006년에는 가계자산조사로 실시되었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조사를 실시하여 가계금융조사로 2010년과 2011년 실시되었고, 2012년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명칭이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다. 노동패널은 1998년 1차조사를 시작으로 2008년 11차조사까지 매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되었으며 원표본가구에 대해 추적조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다만 11차 조사 이후 여러 가지 이유로 그 후속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밖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2008년 이후 매년 재정패널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조세정책과 복지정책에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4차 조사결과까지 공개되어 있다.

먼저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살펴보자. 여기에서는 저축 및 부채, 부동산에 관해 조사하고 있다. 저축으로는 요구불예금, 적금 및 부금, 저축성보험, 목돈예금(원금보장), 목돈예탁(원금보장안됨), 주식, 채권, 개인연금, 갯돈 불입금, 빌려준 돈으로 구분하였으며, 주택마련, 가계생활 또는 기타 용도로 빌려서 아직 갚지 못한 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 직장대출, 사채,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 계탄 후 불입해야할 총액, 외상 및 할부액(신용카드 미결제금),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용자, 대출, 차용의 주된 용도 3가지 및 차입금에 대한 1년 동안의 지불이자 금액도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부동산에 관해서 살고 있던 주택의 자가, 전세, 월세, 기타 여부와 자가의 경우 구입(신축) 또는 상속/증여 시기, 주택구입자금 마련 방법, 시가를 조사하였으며, 전세와 월세의 경우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과 월세도 조사하였다. 이 밖에 살고 있는 주택 이외의 토지, 건물, 주택 보유 여부와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 2만 3720가구의 평균 금융부채⁴⁾는 837만원이며, 현재 거주 중인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보증금의 평균은 786만원이었으며, 현재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은 평균 692만원이었다. 따라서 평균 금융부채와 임대중인 전세보증금을 합한⁵⁾ 한 가구당 평균가계부채는 1529만원이었으며 이를 2000년 전체 가구수 1431만 1807가구에 곱한 값은 218조 9048억원이 산출되고 금융부채만은 119조 8915억원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 신용은 2000년 4분기에 266조 8989억원이었다.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의 경우 한국은행 가계신용 자료에 의한 거시자료와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2006년에는 통계청에서 가구자산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여기에서는 저축, 부채, 부동산에 더해 기타 자산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저축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목돈마련저축, 저축성 보험의 적립식 저축과 목돈예치저축, 주식, 채

4) 전월세보증금을 제외한 부채를 금융부채로 통칭한다.

5) 현재 거주중인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보증금은 자산에 속하며,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은 부채에 속하므로 한 가구의 부채를 산정할 때 금융부채와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을 합하였다. 다만 경제 전체로 볼 때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의 총합은 임차중인 전월세보증금의 총합과 같을 것이고, 자료상에는 현재 거주중인 전월세보증금의 총합이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의 총합보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권의 목돈투자, 그리고 갯돈불입금, 빌려준 돈의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부채로는 금융기관대출로 금융기관, 현금서비스, 마이너스통장미상환액,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을, 기타로 개인, 대부업체, 직장대출 및 갯돈미불입금을 조사하였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입주형태에 따라 자기집, 전세, 보증부월세, 월세 및 사글세, 기타로 구분하여 자기집의 거래시가 및 전세와 보증부월세의 보증금을 조사하고, 거주이외주택, 토지, 건물, 분양 및 중도금 납입액과 주택 또는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기타 자산으로 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및 예술품, 고가내구재, 자동차에 대해 조사하였다.

2006년 가구자산조사 자료 8275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2758만원, 현재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의 평균은 88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현재 거주중인 전세보증금과 보증부월세보증금의 평균은 894만원이었다. 따라서 평균 금융부채와 임대중인 전세보증금을 합한 가구당 평균가계부채는 3638만원이었으며 이를 2005년 전체 가구수 1588만 7128가구에 곱한 값은 578조 892억원이 산출되고 금융부채만은 438조 2269억원이다. 한편 한국은행이 산출한 2005년 4분기 가계신용은 542조 8714억원으로 집계되었다. 2006년 가구자산조사는 2001년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에 비해 거시자료인 가계신용에 근접한 값이 산출된 것을 볼 수 있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로 2001년 조사에서 부채가 없다고 응답한 가구 수는 전체 2만3720가구 중 1만2657가구로 53.36%에 이르렀는데 비해 2006년 조사에서는 8275가구 중 1295가구로 15.65%에 불과하였다. 즉 2001년 조사에서는 상당수의 응답에서 부채에 대해 정확히 답하지 않았거나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한편 전월세보증금의 경우 2001년 조사에서는 1만4930가구, 62.94%가 없다고 답한 반면 2006년 조사에서는 7013가구, 84.75%가 없다고 답하여 부채와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응답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10년 통계청은 가계금융조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동 조사에서는 자산에 대해 실물자산인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금융자산으로 구분하였고, 금융자산 운용에 대한 조사 및 금융부채, 부채상환능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전 조사들과 세부항목에서의 큰 차이는 없었으며 그 결과 조사대상 1만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3175만원,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은 평균 1562만원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임차중인 전월세보증금은 평균 1834만원으로 조사되었으며, 따라서 금융부채와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의 가구당 평균은 4737만원, 2010년 전체 가구수 1733만 9422가구를 곱하면 821조 5213억원의 가계부채가 계산되며, 금융부채만은 550조 6018억원이었다. 2010년 4분기 한국은행이 조사한 가계신용은 843조 1896억원이므로 여전히 그 괴리가 상당한 것을 볼 수 있다.

통계청의 2011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는 조사대상 1만517가구의 평균 금융부채가 3916만원,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은 평균 1767만원, 임차중인 보증금은 평균 20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금융부채와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의 가구당 평균은 5683만원이었으며, 이를 2010년 전체 가구수 1733만 9422가구에 곱하면 985조 4752억원, 금융부채는 679조원으로 산출되었다.

참고로 2011년 4분기 가계신용이 916조 4723억원이었음을 감안한다면 2001년, 2006년, 2010년, 2011년의 통계청의 가계부채관련 조사자료는 전반적으로 과소추정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시자료의 이러한 과소추정은 한국금융연구원(2013)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한 KCB 자료에서 역시 부채규모가 약 747.5조원으로 추정되어 가계신용자료에 비해 적게 추정됨을 볼 수 있다.

<표 1>은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살펴본 부채규모이다.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부채유무를 응답한 경우만 포함하여 부채규모를 살펴보았다. 금융부채는 임대중인 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채들로 노동패널에서는 금융기관 부채, 비금융기관 부채, 개인적으로 빌린 돈, 미리 타고 앞으로 부어야할 계, 기타로 조사된 항목들을 포함하였다. 임대중인 보증금은 전세금, 임대보증금 받은 것으로 조사한 항목이며, 임차중 보증금은 현재 입주중인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으로 조사한 항목을 사용하였다. 이들 중 금융부채와 임대중인 임대보증금의 합에 전체 가구수를 곱하여 가계부채 규모를 계산하였으며, 전체 가구수는 1995, 2000, 2005, 2010년 전체 가구수를 내삽하여 연도별 가구수를 계산하여 사용하였다. 참고로 1차년도에는 임대중보증금을 조사하지 않아 임차중보증금을 사용하여 가계부채 규모를 계산하였다.

<표 1> 노동패널 자료에 따른 부채규모

연차	금융부채	임대중보증금	임차중보증금	금융부채 규모	가계부채 규모 ³⁾
1년차 ('98)	1232만원	N/A	965만원	169조 6561억원	302조 5884억원
2년차 ('99)	1334만원	500만원	945만원	187조 2911억원	257조 4727억원
3년차 ('00)	1218만원	479만원	966만원	174조 3671억원	242조 9183억원
4년차 ('01)	1281만원	470만원	980만원	187조 3332억원	256조 695억원
5년차 ('02)	1542만원	528만원	1043만원	230조 4392억원	309조 3025억원
6년차 ('03)	1847만원	658만원	1164만원	281조 750억원	382조 996억원
7년차 ('04)	1980만원	629만원	1211만원	308조 3866억원	406조 4213억원
8년차 ('05)	2033만원	762만원	1267만원	322조 9936억원	444조 535억원
9년차 ('06)	2271만원	786만원	1313만원	367조 3937억원	494조 6911억원
10년차 ('07)	2595만원	877만원	1391만원	427조 3746억원	571조 9014억원
11년차 ('08)	2672만원	714만원	1582만원	447조 9207억원	567조 6538억원

(주1) 금융부채, 임대중보증금, 임차중보증금은 노동패널 자료에 따른 평균값임.

(주2) 금융부채 및 가계부채 규모는 전체 가구수를 곱하여 산출한 값으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1995, 2000, 2005, 2010년 전체가구수를 내삽하여 전체 가구수를 산출하였음.

(주3) 1년차의 가계부채 규모는 임차중보증금을 사용하여 계산한 값이며, 2년차 이후는 임대중보증금을 사용하여 계산하였음

노동패널 자료에서도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추이는 앞서의 거시자료인 가계신용 자료나 통계청조사자료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통계청 조사와는 2001년과 2006년이 겹치는데 이를 살펴보면 통계청 조사에서는 2001년 금융부채는 119조 8915억원, 가계부채는 218조 9048억원, 2006년 금융부채는 438조 2269억원, 가계부채는 578조 892억원으로 조사된 반면,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2001년 각각 187조 3332억원, 256조 695억원, 2006년에는 367조 3937억원, 494조 6911억원으로 차이가 존재함을 볼 수 있다. 이는 통계청 조사자료와 노동패널 자

료를 사용하여 가계부채 문제를 접근할 경우 어떤 연도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서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임대중인 보증금과 임차중인 보증금 간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앞서 통계청 조사에서 둘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음을 볼 때 임대보증금을 가계부채에 어떻게 포함하는가에 따라 그 괴리가 심하게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은행이 산출한 가계신용의 경우 전년말 기준으로 각각 266조 8989억원, 542조 8714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해보면 노동패널 자료에서도 역시 부채규모가 적게 추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동패널 자료에서는 사실상 금융부채로 보기 어려운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나 제 등을 포함하였음에도 이런 결과를 보여 거시자료에 비해 부채규모가 적게 추정되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계산에서 조사에서의 가중치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2001년과 2006년 통계청 자료와 노동패널 자료에서 추출한 금융부채와 가계부채의 분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였다. SPSS에서 제공하는 비모수검정도구인 Mann-Whitney U 검정의 결과 2001년 금융부채에 대하여는 Z값이 -1.534로 계산되어 두 분포가 같다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6년 금융부채에 대하여는 Z값이 -28.832로 계산되어 두 분포가 같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또한 가계부채에 대하여는 Z값이 각각 -4.048, -23.270으로 나타나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다음으로 2표본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수행한 결과로는 금융부채에 대해서는 Z값이 각각 3.778, 21.193,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4.242, 18.073으로 계산되어 표본이 동일한 분포에서 나왔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 자료와 노동패널 자료에 따른 금융부채와 가계부채의 분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가계부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두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유사한 결론을 얻을 수도 있지만 그 분포의 차이로 인해 그 해석에 있어서는 주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조사자료를 통한 미시자료로 가계부채를 살펴보는데 있어 이러한 과소추정 문제는 왜 발생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자료가 가지는 한계로 응답자가 본인의 부채에 대해 정확히 답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즉 부채라는 것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로 인해 응답자가 자신의 부채규모를 적게 이야기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응답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채가 존재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다음으로 표본 구성에 있어 과다채무를 지고 있는 가구가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몰려 있는 경우 표본 구성방식에 의해 과소추정될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버블세븐지역과 같이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던 특정 지역이나 하우스푸어로 분류되는 계층에 과다채무가 몰려 있을 경우 현재의 표본 구성방식에서는 이를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대해 과소추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계부채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사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시자료를 가계부채문제의 연구에 활용할 경우 유의할 점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였다. 먼저 과거 수행된 통계청의 가계금융관련 조사들과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가계부채규모를 계산하고 이를 한국은행에서 집계하는 가계신용자료에 따른 가계부채 규모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통계청 조사와 노동패널 자료에서 금융관련 부채들을 합산하여 계산한 결과 모두 가계신용보다 적게 나타났다. 다만 이들 미시자료에서는 임대보증금과 같이 가계신용통계에서는 포함되지 않는 부채가 조사되어 있는데 이들 규모는 대략 금융관련 부채의 50~60% 정도의 규모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계신용통계에 나타나는 규모에서 약 1.5배 정도가 실질적인 가계부채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한편 통계청 조사자료와 노동패널 자료는 가계부채에 관하여는 서로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미시자료를 통한 연구에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경아(2011), 국내 가계의 부채증가 추세 및 요인에 관한 연구, 응용경제 제13권 제1호, pp.209-237.
- 김우영, 김현정(2010), 가계부채의 결정요인 분석, 국제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pp.39-78.
- 김학주(2005), 소득계층별 가계의 부채부담 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1권 제1호, pp.119-147.
- 김현정, 손종철, 이동렬, 임현준, 나승호(201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BOK 경제리뷰 No.2013-4.
- 백은영, 성영애(2012), 부채 취약가계 결정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1권 2호, pp.225-240.
- 성영애(2006),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 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17권 제4호, pp.39-60.
- 성영애(2010), 가계부채의 용도별 보유현황 및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제21권 제3호, pp.29-52.
- 전승훈, 임병인(2008), 2000년 이후 가계의 자산 및 부채 보유 실태의 변화분석, 재정학연구 제1권 제2호(통권 제57호), pp.133-162.
- 전승훈, 임병인(2012), 금융위기 전후 가계부채 보유실태 및 부채위험 분석, 재정정책논집 제14집 제2호, pp.67-102.
- 조영무(2013), 최근의 국제적인 재정통계 지침으로 본 우리나라의 공공부문 채무 수준, LG Business Insight 2013 5 15, LG경제연구원.
- 최필선, 민인식(2008),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계층별 특성 연구, 사회과학연구 34(1), pp.135-165.
- 한국금융연구원(2013), 가계부채 백서. KIF 금융리포트 2013-01.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 한동익, 최현자(2012), 금융소외가계의 부채부담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제5권 4호, pp.73-99.